

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2211356    |
| 의 퇴 인 | 조승환의원      |
| 회 답 일 | 2025.7.31. |
| 추계번호  | 25D3669    |

## 공무원 건강안전기본법안

### 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건강·안전지도관 배치·건강안전심의위원회 운영·건강안전 수준 평가·건강안전교육·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6억 8,800만원, 2031년 121억 4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13억 6,600만원(연평균 122억 7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2031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건강·안전지도관 배치<br>(안 제9조·제10조) | 11,810 | 11,146 | 11,449 | 11,759 | 12,079 | 58,243 | 11,649 |
| 건강안전심의위원회<br>(안 제15조제3항)    | 7      | 7      | 7      | 7      | 7      | 35     | 7      |
| 건강안전 수준 평가<br>(안 제21조)      | 11     | 11     | 11     | 11     | 11     | 55     | 11     |
| 건강안전교육<br>(안 제30조)          | 41     | 41     | 41     | 41     | 41     | 205    | 41     |
| 건강안전 관리시스템 구축<br>(안 제33조)   | 2,819  | —      | 3      | 3      | 3      | 2,828  | 566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,688 | 11,205 | 11,511 | 11,821 | 12,141 | 61,366 | 12,273 |

주: 본 추계는 안전보건관리자(「산업안전보건법」) 보수 수준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, 실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,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1  | 안 제3조(주관) | <p>인사혁신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(제1항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</li> <li>2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</li> <li>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·장비의 안전 점검 및 컨설팅</li> <li>4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건강진단 및 상담</li> <li>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관련 홍보 및 국내외 교류·협력</li> <li>6.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li> </ol>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2  | 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|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함(제1항)<br>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홍보<br>2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기준의 마련<br>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<br>4. 그 밖에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| 의무규정 |
| 3  | 안 제9조(건강지도관)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건강안전 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건강지도관”이라 함)을 배치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공직건강 지도사 또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4  | 안 제10조(안전지도관)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(이하 “안전지도관”이라 함)을 배치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안전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제2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5  | 안 제11조(건강관리의의)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건강관리의를 임명하거나 위촉함. 다만, 의사를 건강지도관으로 둔 경우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건강지도관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건강관리주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(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6  | 안 제14조(건강안전협의회)        |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,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안전협회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하며, 건강안전협회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함(제2항 및 제3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7  | 안 제15조(건강<br>안전심의위원회)               |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건강안전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(제1항),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(제2항)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(국·공립 대학의 교원 제외)이 아닌 사람으로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(제3항), 위원은 각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 또는 건강관리의로 함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헌법기관 소속의 건강안전심의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소속 건강안전심의위원회에는 사무처를 둔(제5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8  | 안 제16조(공직<br>건강안전지원단)               | 공무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인사혁신처 소속으로 각 권역에 공직건강안전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함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단의 업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 9  | 안 제21조(건강<br>안전 수준 평가)              |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교육감을 대상으로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수준을 평가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0 | 안 제22조(공무상<br>재해 현황 통계) 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를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1 | 안 제23조(위험<br>요인 진단 및 조치)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신체 및 사회심리적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공무상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진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| 의무규정 |
| 12 | 안 제26조(심리<br>검사의 지원)    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3 | 안 제30조(건강<br>안전교육)                  | 국가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건강안전교육을 하여야 함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14 | 안 제32조(공직<br>건강지도사의 자<br>격·시험 및 등록) |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을 가짐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규정 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직건강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,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(제4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| 15 | 안 제33조(공무원<br>건강안전 전자관리<br>시스템)     |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건강 및 안전 확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연계를 위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음(제1항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량규정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3조(주관)                   | ×    |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6조제2항에 유사한 내용(재해예방 사업)이 규정되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2  | 안 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     | ×    |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46조제1항에 유사한 내용(재해예방 시책)이 규정되어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안 제9조(건강지도관) 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안 제10조(안전지도관) 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안 제11조(건강관리의)               | ×    |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·관리를 위하여 시·군·구에 1개소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고, 제정안 제3항에 따라 건강관리의 업무를 보건소(전국 261개) 등에 위탁할 수 있음 |
| 6  | 안 제14조(건강안전협의회)             | ×    | 인사혁신처 소관 2025년 예산 중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(2044-306)의 내역사업인 “범정부 재해예방 협의회 구성 및 운영비”에 1,200만원이 편성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안 제15조(건강안전심의위원회)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안 제16조(공직건강안전지원단)           | ×    | 인사혁신처 소관 2025년 예산 중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(2044-306)의 내역사업인 “공무원마음건강센터 운영”에 17억 1,500만원이 편성되어, 전국 10개 권역에서 마음건강센터를 운영 중임         |
| 9  | 안 제21조(건강안전 수준 평가)          | ○    | 실태조사(안 제18조)는 건강안전 수준 평가에 포함하여 실시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안 제22조(공무상 재해 현황 통계)        | ×    | 현재 공무상 재해 심의결과 통계를 작성 중.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을 활용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안 제23조(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)        | ×    | 현재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36조(위험성평가의 실시)에 따라 물리적 위험요인 제거 등이 조치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안 제26조(심리검사의 지원)            | ×    | 전국 10개 권역 공무원마음건강센터를 통해 지원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안 제30조(건강안전교육)           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4 | 안 제32조(공직건강지도사의 자격·시험 및 등록) | ×    | 유사 국가전문자격 시험인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의 경우, 수입(응시수수료)이 시험실시 비용을 초과하고 있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5 | 안 제33조(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 시스템)   | ○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건강지도관(안 제9조)과 안전지도관(안 제10조)의 배치(연봉, 기관부담금), 건강안전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5조), 건강안전 수준 평가(안 제21조), 건강안전교육(안 제30조),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33조)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
- 본 추계에서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책무를 가지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(49개), 광역지방자치단체(17개), 교육청(17개), 헌법기관 또는 독립기관(11개) 등 총 94개 기관으로 가정함
  -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가정함

[표 2]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확보 책무 기관

(단위: 개)

| 구분   | 중앙행정기관 | 광역지자체 | 교육청 | 헌법기관 등 | 합계 |
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|--------|----|
| 기관 수 | 49     | 17    | 17  | 11     | 94 |

자료: 인사혁신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 건강지도관(안 제9조)과 안전지도관(안 제10조)의 인건비는 94개 기관이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을 각각 1명씩 배치하고, 그 보수는 일반 임기제공무원 7호(2025년 기준 연봉 49,273천원)에 준한다고 가정함
  - 인사혁신처에 따르면, 현재 각 기관(현업업무 종사자 50명 이상)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경우, 주로 일반임기제공무원 7급(일부 8급)으로 채용하고 있음
  - 「공무원보수규정」 [별표 33] 7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7호의 연봉 상한액과 하한액<sup>1)</sup>의 평균인 49,273천원을 적용함

1) 「공무원보수규정」 [별표 33]

7. 임기제공무원

가. 일반임기제공무원

(단위: 천원)

| 연봉등급 |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한액    | 하한액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7호   | 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| 66,591 | 31,956 |

- 본 추계에서 5개 국가기관(국회, 대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인사혁신처)에 설치하는 건강안전심의위원회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4조<sup>2)</sup>와 시행령 제35조<sup>3)</sup>를 참고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되, 안 제15조 제3항<sup>4)</sup>에 따라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, 나머지 위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가정함
  -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사무처(지원조직)는 각 기관의 총무·인사 분야 등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이 겸임하여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- 본 추계에서 건강안전 수준 평가(안 제21조), 건강안전교육(안 제30조),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33조)은 유사 사례를 적용하여 추정함
  - 건강안전 수준 평가: 유사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사례 적용
  - 건강안전교육: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외부강사 수당 지급단가 437천원(수당 350천원, 여비 87천원) 적용
  -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: 보건복지부 ‘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’ 구축·운영 사례 적용

2) 「산업안전보건법」

제24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3)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

제35조(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)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

1. 근로자대표

2. ……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

3.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(팔호 안 생략)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

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. <단서 생략>

1. 해당 사업의 대표자(팔호 안 생략)

2. 안전관리자(팔호 안 생략) 1명

3. 보건관리자(팔호 안 생략) 1명

4. 산업보건의(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
5.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

4) 안 제15조(건강안전심의위원회) ③ 건강안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(국·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)이 아닌 사람으로서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.

[표 3] ‘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’ 구축·운영 사례: 2021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       | 2021  | 2022  | 2023 | 2024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장애인건강보건<br>관리시스템 구축 | 시스템 개발 | 1,140 | 847   | 528  | —    | 2,515 |
|                     | 감리비    | 85    | —     | —    | —    | 85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인프라 구입 | —     | 450   | 268  | —    | 718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소계     | 1,225 | 1,297 | 796  | —    | 3,318 |
| 시스템 유지관리비           |        | —     | —     | 98   | 65   | 163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| 1,225 | 1,297 | 894  | 65   | 3,481 |

주: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관리비는 연도별 예산 집행액 기준임

자료: 보건복지부 소관 예결산 사업설명자료(Ⅱ-1)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

- 본 추계에서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의 인건비(보수,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)와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, 기관부담금 요율, 자산취득비 단가(정부기관),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정함<sup>5)</sup>
- 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있고,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가.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 배치(안 제9조 및 제10조)

-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 배치(인건비, 기관부담금, 자산취득비)의 추가재정 소요는 이를 배치할 의무가 있는 94개 기관에 일반임기제공무원 7호의 연봉 평균액을 곱한 후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른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 배치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

5)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전망(2025.3.31. 경제전망 기준)

| 구분          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2031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(%) | 2.4    | 2.4    | 2.4    | 2.4    | 2.4    |
| 기관부담금 요율(%)    | 13.130 | 13.194 | 13.286 | 13.380 | 13.476 |
| 자산취득비 단가(천원)   | 5,080  | —      | —      | —      | —      |
| 소비자물가상승률(%)    | 2.0    | 2.0    | 2.0    | 2.0    | 2.0   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표 4] 건강지도관과 안전지도관 배치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|         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2031   | 합계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인건비   | 기관수        | 94     | 94     | 94     | 94     | 94     | —      |
|       | 채용인원       | 2      | 2      | 2      | 2      | 2      | —      |
|       | 평균 연봉액(천원) | 51,666 | 52,906 | 54,176 | 55,476 | 56,808 | —      |
|       | 소계         | 9,713  | 9,946  | 10,185 | 10,430 | 10,680 | 50,954 |
| 기관부담금 |            | 1,141  | 1,200  | 1,264  | 1,330  | 1,399  | 6,334  |
| 자산취득비 |            | 955    | —      | —      | —      | —      | 955    |
| 합계    |            | 11,810 | 11,146 | 11,449 | 11,759 | 12,079 | 58,243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나. 건강안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(위원장, 안 제15조제3항)

-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참석수당은 위원회 설치 기관인 5개 국가기관에 회의참석수당(회의참석수당 25만원, 안전검토비 10만원)을 적용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른 건강안전심의위원회 위원장 회의참석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

[표 5] 건강안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(위원장)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|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회의참석수당<br>(위원장) | 기관수  | 5    | 5    | 5    | 5    | 5    | —  |
|                 | 지급인원 | 1    | 1    | 1    | 1    | 1    | —  |
|                 | 회의횟수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—  |
|                 | 수당단가 | 0.35 | 0.35 | 0.35 | 0.35 | 0.35 | —  |
| 합계              |      | 7    | 7    | 7    | 7    | 7    | 35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다. 건강안전 수준 평가(안 제21조)

- 건강안전 수준 평가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평가위원회 참여위원 평가수당(국가/지자체 구분 평가)과 평가위원 양성교육(2회) 및 참석수당을 합산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른 건강안전 수준평가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

[표 6] 건강안전 수준 평가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|      | 2027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계 |
|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|
| 평가위원<br>참여수당 | 평가위원 | 10   | 10   | 10   | 10   | 10   | —  |
|              | 평가횟수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—  |
|              | 수당단가 | 0.35 | 0.35 | 0.35 | 0.35 | 0.35 | —  |
|              | 소계   | 7    | 7    | 7    | 7    | 7    | 35 |
| 평가위원<br>교육   | 평가위원 | 10   | 10   | 10   | 10   | 10   | —  |
|              | 교육횟수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2    | —  |
|              | 참석수당 | 0.20 | 0.20 | 0.20 | 0.20 | 0.20 | —  |
|              | 소계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4    | 20 |
| 합계           |      | 11   | 11   | 11   | 11   | 11   | 55 |

주: 인사혁신처의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라. 건강안전교육(안 제30조)

- 건강안전교육 실시비용은 94개 기관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(외래강사 수당 35만원, 여비 8.7만원)을 곱하여 추계함
-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른 건강안전교육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계됨

[표 7] 건강안전교육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|      | 2027  | 2028  | 2029  | 2030  | 2031  | 합계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|
| 건강안전<br>교육 | 기관수  | 94    | 94    | 94    | 94    | 94    | —   |
|            | 강사인원 | 1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1     | —   |
|            | 수당단가 | 0.437 | 0.437 | 0.437 | 0.437 | 0.437 | —   |
|            | 합계   | 41    | 41    | 41    | 41    | 41    | 205 |

주: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계산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#### 마.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(안 제33조)

-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가 구축·운영 중인 ‘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’을 참고하여 시스템 구축비와 유지관리비로 구분하여 추계함
  -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 시 소프트웨어 개발의 복잡도와 난이도는 ‘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’과 유사하다고 가정함

- ‘장애인건강보건관리시스템’의 구축(25억 1,500만원)이 2023년 완료되었으므로, 이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의 구축비를 추정하고, 유지보수 비용은 시스템 구축비의 10% 수준으로 하되, 차차년도(2029년)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

□ 추계결과, 제정안에 따른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의 추가재정소요는 다음 표와 같이 추정됨

[표 8] 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의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  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2027  | 2028 | 2029 | 2030 | 2031 | 합 계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공무원 건강안전<br>전자관리시스템 | 시스템 구축비   | 2,727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2,727 |
|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감리비   | 92    | -    | -    | -    | -    | 92    |
|                     | 시스템 유지관리비 | -     | -    | 3    | 3    | 3    | 9 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2,819 | -    | 3    | 3    | 3    | 2,828 |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바. 추계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건강·안전지도관 배치·건강안전심의위원회 운영·건강안전 수준 평가·건강안전교육·공무원 건강안전 전자관리시스템 구축을 하는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6억 8,800만원, 2031년 121억 4,1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613억 6,600만원(연평균 122억 7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9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7   | 2028   | 2029   | 2030   | 2031   | 합계     | 연평균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건강·안전지도관 배치<br>(안 제9조·제10조) | 11,810 | 11,146 | 11,449 | 11,759 | 12,079 | 58,243 | 11,649 |
| 건강안전심의위원회<br>(안 제15조제3항)    | 7      | 7      | 7      | 7      | 7      | 35     | 7      |
| 건강안전 수준 평가<br>(안 제21조)      | 11     | 11     | 11     | 11     | 11     | 55     | 11     |
| 건강안전교육<br>(안 제30조)          | 41     | 41     | 41     | 41     | 41     | 205    | 41     |
| 건강안전 관리시스템 구축<br>(안 제33조)   | 2,819  | -      | 3      | 3      | 3      | 2,828  | 566    |
|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,688 | 11,205 | 11,511 | 11,821 | 12,141 | 61,366 | 12,273 |

주: 본 추계는 안전보건관리자(「산업안전보건법」) 보수 수준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, 실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,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## 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인 안전보건관리자(산업안전보건법) 보수 수준, 위원회 및 평가 운영,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외래강사 수당,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스템 등을 참고하여 추정한 것으로, 실제 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,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금액과 달라질 수 있음

## 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행정비용추계과 | 장삼열 | 김안나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|
| 장삼열 | 02-6788-4831 | jsy@assembly.go.kr |